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8. 10.(목) 14:15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1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2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고안건>과 <의결안건>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최성호 기획조정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2017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한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방송광고 및 매출액 구간별로 징수율을 나누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징수율을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었거나 당기 순손실이 변동된 지역·중소 방송사는 최종징수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방송광고 매출액이 감소하여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었거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12개사는 징수율을 감경하고 흑자로 전환된 1개사는 징수율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종편·보도PP의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JTBC를 제외하고는 5개사 모두 당기순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종징수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종편·보도PP의 자본 결손이 여전하고,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 추세인 점, 그리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징수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최종징수율을 종전 0.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이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20일간의 행정예고, 규제위·기재부 심의를 거쳐 9월 중에는 위원회 의결 및 고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지상파방송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기준이 방송광고 매출액이지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광고매출액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광고매출액, 그런데 방송광고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16년도에 전년도 대비해서 15%가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7%가 줄었습니다. 미디어 환경,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전략 변화에 따라서 이런 매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성호 기획조정관

-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상파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이 하락했고, 또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정한 이유는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2년 전에 전체적인 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수율 방식을 정한 지가 2년밖에 안 되었고 또 그 감소 추세나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지난번처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만약에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매출 하락이 고착화된다면 제도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제도개선 방안연구를 9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SO, IPTV, 위성방송은 방송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 허 옥 부위원장

- 또한 흡쇼핑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사업자들이 협찬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TV조선의 경우에 지난해 광고와 협찬을

합친 매출액이 1,056억원이고 이 중에 협찬매출이 533억원을 차지해서 협찬 비중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고매출뿐만 아니라 협찬 매출액, 재송신 매출액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등이 포함된 방송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PP 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머지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 욱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과 가장 큰 변화는 종편PP와 보도PP에 대해서 현행 0.5% 징수율에 0.5%를 더 해서 1%로 하는 것이 이번의 요지 아닙니까?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이 징수율 상향은 이번에 갑자기 논의된 것이 아니라 3기 위원회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고, 어찌 보면 3기 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간 것들을 이번에 우리가 정리해 줬다, 이 성격이 있는 것이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여기 안건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정책을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방송사의 특성에 따라서 징수율 기준을 정했는데, 어쨌든 방송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협찬 매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부과에 넣을 것인지 하는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종편·보도PP에 지금 현재 단일 징수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방송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연구과제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편과 보도PP에 대해서 그동안 유예를 해 주다가 작년부터 분담금을 받고 있지요. 0.5%에서 이번에는 1%로 올리자는 안인데 그렇게 돼도 지상파 분담금이 약 687억원 걸립니까?

○ 최현숙 재정팀장

- 작년 기준으로 지상파는 620억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종편들 4사와….

○ 최성호 기획조정관

- 2016년에 620억원을 걷었고, 이번에 결정된 징수율대로 한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광고매출액이 줄었기 때문에 519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편 같은 경우 작년에 약 10억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2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동안 매출액 증대, 또 사회적 영향력 확대, 또 광고가 지상파는 많이 줄고 있고 종편들은 많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격차가 많이 좁아지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당장 종편이나 보도PP를 올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불균형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는 구간별 광고매출 실적에 따라서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PP나 종편들은 일률적으로 딱 몇 퍼센트, 1% 이렇게 올리다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하는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조금 전에 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방송사들의 특성에 따라서 징수율 방식을 달리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편PP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IPTV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격차를 얼마큼 줄일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파 같은 경우는 주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형평성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이번 국정과제에도 지상파와 종편의 규제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형평성 있는 분담금 징수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리고 지금 당장 종편이나 보도PP에 대한 징수율을 급작스럽게 높이는 데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 데 대한 연구과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열악한 지역방송, 중소방송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기는 지금 적자 발생 시 징수율 2분의 1, 반으로 감면해 주는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이지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맞습니다.

○ 최현숙 재정팀장

- 고시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역방송이 어렵습니다. 또 중소방송은 굉장히 어렵는데 지상파도 어렵지만 여기는 덩달아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소들을 하는데 지역방송사들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분담금을 내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그 방발기금이 우리가 내는 돈이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이런 불만들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들을 방발기금 운용계획을 짤 때 적절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역방송, 중소방송의 그런 열악한 여건과 또 공공성, 지역성을 우리가 어떻게든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KBS나 EBS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경감하는 방안을 현재 적용하고 있지요?

○ 최현숙 재정팀장

-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역방송이나 중소방송 같은 경우도 혹시 이런 공영방송 KBS, EBS에 대해서 적용해 준 것처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혹시 검토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 보고 싶은데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최성호 기획조정관

-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 중소방송에 대해서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2분의 1로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지역방송사의 열악한 상황을 계속 감안해서 KBS처럼 감경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역방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분담금 징수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기금이 지역방송사에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역방송사 또 중소방송사가 1억, 2억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역성·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또 지역방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드립니다. KBS와 EBS는 정부가 전액을 출자한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러면 지역방송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KBS와 EBS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한 말씀드리면 KBS, EBS처럼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좀 더 지역방송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2017년도 분담금 징수율은 오늘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접수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방송시장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분담금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광고매출로 한정되어 있는 분담금 부과 기준의 확대 여부, 또 지상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징수율을 결정하고 있는 종편·보도PP에 대한

분담금 징수제도 개선 여부, 또 나날이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상파, 특히 지역·중소 방송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과 같은 제도개선 검토 작업을 사무처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알겠습니다.

나.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 조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보고사항 나> '방송사-외주제작사간 외주제작 실태 조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세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실태 조사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독립PD 사망 사건 등으로 부각된 방송사-외주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추진체계, 추진방안, 일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월에 금년도 업무계획에 외주제작시장 실태조사계획을 포함하였고, 5월부터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조사 사항에 대해서 추진방안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100대 국정과제에도 외주제작 실태조사를 포함하였고, 7월에 박환성·김광일 PD가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기본 방향입니다. 조사의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외주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할 내용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시장의 거래관행 및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관련 사항 등을 망라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대상과 일정은 소요 인력, 기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방통위와 문체부의 업무분장을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방송사 쪽은 지상파 4사, 즉 KBS, MBC, SBS, EBS를 모두 포함하고, 종편PP 및 CJ E&M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주제작사 쪽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소속 외주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로 하되, 필요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방통위를 중심으로 문체부, KISDI,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그림과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입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시장의 거래관행 및 외주제작 인력의 과도한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방통위의 조사대상은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조사대상은 외주제작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방통위에 특별한 한정된 사항으로 제작비 지급 및 수익배분, 그리고 문체부에 한정된 사항으로 스태프의 근로여건 등 업무환경이 되었고, 계약의 공정성 및 이행도, 그리고 표준계약서 사용은 방통위와 문체부 공동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작비 및 표준계약서 분야에서는 제작비 지급 시기, 방송프로그램 편성 중단에 따른 제작비 미지급 사례, 표준계약서 활용

및 계약 시점 등을 조사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리와 수익배분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의 유통 및 저작권 등 수익배분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사-외주제작사간 거래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성은 물론이고, 개선방안 관련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여건 관련해서는 외주 스태프의 과도한 노동시간, 부당한 근로환경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밑에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와 합동조사반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 다음에 먼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 현장방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결과 보고 및 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가 끝난 후에 8월 중으로 협조공문을 대상사업자들에게 발송하고 8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12월까지 제작비 지급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번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남아프리카에서 현지 촬영을 하던 외주제작사 PD 두 사람이 과도한 촬영 일정, 빠듯한 제작비 때문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사안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외주제작에 대한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 기회에 방송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소위 갑질 횡포가 많다고 하는데 그 실태가 어느 정도 인지를 자세히 파악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정부가 지급하는 제작지원금을 방송사가 계약을 외주사와 하면서 많게는 40%에서 60%까지 방송사가 도로 뜯어가는 그런 갑질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지 잘 들여다봐서 파악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번 기회에 이런 외주사와 방송사 간의 제작 관행, 거래 관행 조사를 이번에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부문 같은 경우 오히려 갑질을 외주사가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확인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드라마는

가장 힘을 갖는 요인이 스타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외주사, 또 유명작가, 작가와 배역 캐스팅 스타들에 의해서 드라마가 좌우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쥐고 있는 제작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오히려 방송사가 거기에 갑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역전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꼼꼼히 잘 실태조사를 벌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제가 지난 화요일 독립PD협회 임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사간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그런 사안들이었던 것으로 확인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표준화되고 구속력 있는 계약관계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데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사항에 대한 관리를 잘할 필요도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경중과 완급을 구분해서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제작비 지급 문제, 또 저작권 등 수익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등을 포함하는 외주제작 시장의 거래관행, 과도한 근로시간 등을 포함 근로여건 등은 초점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느꼈던 것은 혹시 콘텐츠진흥재단이라고 아십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콘텐츠 관련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비영리법인으로 별도로 등록해서 과거 롯데홈쇼핑이 출연해서 만들었는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현재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PD들 입장에서는 방송사에게 모든 저작권을 다 내주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서 콘텐츠진흥재단에게 예를 들면 20% 양도를 해서 우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레버리지로 사용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콘텐츠진흥재단조차도 갑으로 전환되더라, 그래서 상당히 불편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콘텐츠진흥재단의 운영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이 정확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문체부를 통해서 이 문제를 조사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콘텐츠진흥원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재단이라고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 소관의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방통위 산하의 비영리법인, 비영리재단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아니라 콘텐츠재단입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 분은 촬영을 떠나기 전에 지상파 외주제작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외주제작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고 잘못된 외주제작과 업계 관행에 희생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외주제작 시장은 대표적인 약육강식의 시장입니다. 이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독립제작사협회와 지상파 PD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PD연합회까지도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불합리한 외주제작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번에 외주제작 실태조사 하는 것도 지금 범정부적으로 소관 업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착수합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조사는 처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실태파악을 해 왔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외주제작의 실상은 알릴만큼 충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실태파악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무게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야무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외주제작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발표를 했지만 지금 이 일정으로 보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11월까지 하고 필요시 연장을 한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12월에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일정을 지켜주십시오. 보고서 초안을 일찍 마련해서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는 실태조사를 넘어서 외주제작의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주제작업체가 수주했을 경우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아예 외주 제작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큼니다. 쉽게 말씀드리어서 이것이 외주제작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형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저러한 이유로 위에서 오더 내려오고 이미 다 정해져서 진입 자체가 안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진입장벽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방송사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절차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도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짧막하게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두 젊은 PD가,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PD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주제작사에 이런 유능하고 또 무명, 크게 빛을 못 보고 있는 이런 PD들이 다 우리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되겠다고 보고 있고, 국무총리께서도 국무회의에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하실 정도로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주시고, 정말 억울함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12월에 보고서가 나온다는데 그 전에라도, 11월 말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짧막하게 제가 보태고 싶은 것은 방송시장을 들여다보면 외주사에 자본이 취약하고 아직 진입장벽을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능이 있고 또 창의력이 풍부한 벤처 같은 외주제작사가 우후죽순 많이 생겨 있습니다. 정말 유능하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대본을 가지고도 진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외주사의 자본력과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형 외주사가 작가를 많이 확보하고, 대형 작가를 확보하고, 스타들도 다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이런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되는지, 거기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 적어도 재능은 발휘할 수 있게끔 아주 영세,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 해소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을 조사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들여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방송사 조사대상은 KBS, MBC, SBS, EBS, 종편PP, CJ E&M 거의 전수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외주제작사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 할 수 없고 선별해서 해야 할 텐데 선별기준이 있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구체적인 사안은 외주사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가 접근성이나 조사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중요도를 보고 선정해서 저희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선별하는데 있어 대표성 있게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주제작사별로 각각 전문성 있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다큐멘터리만 한다든지, 드라마만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대표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정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균형감 있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금번 외주제작 실태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독립PD 문제' 등 방송계 내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정방안 마련을 지시하셨고, 저도 빈소를 방문해서 유족을 위로 하고 방송시장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해결의지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본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고착화된 외주제작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조사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채널 및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앞장서서 견인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의결사항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 (2017-23-135)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최성호 기획조정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계획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의 사장 선임계획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중범 前 EBS 사장의 의원면직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거하여 EBS 사장을 보궐임명하기 위한 선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결원 시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임원을 임명하되,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은 2018년 11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임 방안입니다. 먼저 후보자 모집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후보자를 공개모집 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서 공모하고, 접수기간은 2017년 8월 11일부터 2017년 8월 2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자천 및 타천 방식으로 접수하되, 원활한 심사 업무 등을 위해 타인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피추천인과 협의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정입니다.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서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된 후보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EBS 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9월 초경에는 새로운 EBS 사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는 사장 궐위 후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EBS 사장 사의표명이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저희에게 사표 제출해서 수리된 것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 11일 당장 내일 공고를 하게 되면... 통상 공공기관의 기관장 인사 같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2주일 정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렇게 딱 맞춰서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사전 보고받을 때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능한 분을 모셔서 EBS를 잘 경영하도록 해야 하는데 통상 기간이 촉박하다 보면 여기에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응모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공고기간을 기본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2주 정도는 충분히 줘서 훌륭한 분들이 준비해서 응모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수정제안을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종전에는 보통 얼마쯤 했었습니까?

○ 최성호 기획조정관

- 보통은 2주간을 했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종전에도 2주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 허 옥 부위원장

- 요즘 여름 휴가철도 끼고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고, 뒷부분의 혹시 일정을 조절할 수 있으면 30일간 기간을 맞추더라도 이 기간은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호 기획조정관

- 당초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정한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30일을 맞추되 정례적인 위원회 일정을 맞춰서 뒷부분을 여유 있게 뒀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공모기간을 늘렸을 경우에도 뒷부분 일정을 위원회 날짜를 앞당긴다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30일 내 임명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때마다 EBS 사장 선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소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낙하산 인사' 이런 논란 때문에 진통을 겪기도 하고, 방통위 안에서도 많은 감론을 막 끝에 매끄럽지 않게 선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이 돼서 우리 교육계와 방송계에서 신망을 받는 분이 또 교육철학을 갖고 방송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좋은 분이 오셔서 EBS가 이제 일산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9월입니까? 지금 사옥을 옮겨서 새로운 제2의 도약을 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새 사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런 시시비비가 없이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모두가 환영받는 이런 원만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좋은 분을 모시도록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모기간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촉박한 일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최성호 기획조정관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혹시 지장이 없다면 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접수하는 기간이 2주일 하고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사흘 차이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단지 그 기간을 사흘 늘려서 2주일로 하고 그 뒤에 후속절차를 서둘러서 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후속절차도 시간을 촉박하게 한다고 해서 소홀함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좋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할 때 2주의 기간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본문내용의 선임방안 및 추진일정 중 후보자 모집 공모를 아까 며칠까지 라고요? 24일, 25일….

○ 고삼석 상임위원

- 2주면 25일까지 될 것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25일까지 하는 것과….

○ 최성호 기획조정관

- 25일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예, 그렇게 조정하기로 하고 일정을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제의하신 일정에 따라

8월 말에 지원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건 (2017-23-136)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그 시행일은 금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1일 고시 제정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 26일에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행위주체 및 상대방을 각각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제하고 안 제3조에서 부당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행위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첫째, 의도 및 동기 등 행위주체에 관한 요소, 둘째 진입장벽, 대체가능성 등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 셋째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행위의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열거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등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보고 후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부기준 고시는 이용자의 이익의 현저한 침해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부당성 판단기준 중 경쟁제한성 조문, 즉 안 제3조제1항 제2호 라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정예고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보 게재 예정일은 8월 16일 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조사관 및 사업자들이 고시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부당성 명확성 제고를 위해서 고시 해설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에 경과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3기 방통위에서 거의 결론을 도출했던 것이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 당시에는 이견이 크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오늘 의결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플랫폼 중립성, 과장님 그 사항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연관이 있습니다만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용어는 조심스럽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는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규제를 신설합니다만 새로운 규제가 생길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국내외 사업자간의 차별 규제, 즉 규제를 만들면 국내 사업자에게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관련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원칙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이번의 제정안은 차별고시 차별 고시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사업자, 국외사업자 모두 적용이 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상호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차별이나 제한이 있을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사업자들이 웹서비스 같은 사업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외국의 대형 포털들, 이런 인터넷 사업자들이 있는데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부당행위기준을 만드는 것은 나중에 시장에서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즉 조사하고 제재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다릅니다. 국내사업자는 바로바로 조사와 또 신속한 제재가 가능한 반면에 외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것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신설한 것도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외국사업자들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는 분명히 조사단계라든가 그다음에 제재하는 절차들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사업자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제재하는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매뉴얼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언론이나 국회, 우리 국내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의 규제행위에

대한 불신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법무법인에 외국 사업자들의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나 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쯤이면 그런 해외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가 페이스북, 조사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것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사업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소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 때문에 조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국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선 조치, 콜업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콜업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 조치하고 후 조사하고 제재가 필요하면 제재하는 그런 절차도 분명히 전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고 또 피해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선 조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방치했을 때 보면 그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경제적 손실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조사하고 제재하는 데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선 조치, 후 조사와 제재 이 프로세스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기간통신 역무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해서 이용자 접점이 많은 포털이나 개방형 SNS 등 부가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했다는 것, 또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기간 통신사업자들은 이 고시를 사실상 망 중립성 규제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포털 등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플랫폼 중립성 규제에 해당한다고 해서 일부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설득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 그 의견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작년에 시행령 개정 과정 이후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연구반 운영 과정에서 부위원장님 지적 하신 것과 같은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시에서는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사업자와 부가사업자, 부가 사업자 상호간에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차별행위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방통위에서 심결해서 구체적인 케이스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사업자들에게 미리 또 알려져서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 또는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대한 담론인 망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보다는 결국에는 시장에서 공정 경쟁질서,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가 되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사례 중심으로 쌓을 때 적절한 내용들이 뭐고 어떤 부분들이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는 방식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을듯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은 분명히 조성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전 강조하신 대로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나 이용자 이익침해행위는 단호하게 규제하는 원칙이 이 고시를 계기로 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면 주시지요. 망 사업자와 네이버와 같은 부가사업자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KT나 SKT, LGU+ 평균치와 네이버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망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와 구분해서 매출액을 잡지 못했는데 이동통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3사가 26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네이버는 정확한 매출액은...

○ 고삼석 상임위원

- 4조원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아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4조원이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은 상당히 대규모 사업자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대규모 사업자로서의 역할에 사회적인

의무나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의무를 보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이런 것은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방송통신 시장에서 공정경쟁 질서 확립은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 부가통신시장에서도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보기에 이쪽 사업자들이,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불이익이나 차별이 있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7-23-137)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주)디지파츠, (주)삼미정보시스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씨앤피에스, (주)아트엘비에스, (주)웅진플레이도시, (주)프라이머리넷 7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사항 중 (주)웅진플레이도시에는 1번~4번까지, 나머지 6개 법인에 대해서는 1번에서 3번까지 허가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허가조건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를 2017년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총 11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주)블루고고는 허가신청 이후 중국본사의 한국사업 철수로 인하여 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사업자가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신청법인 주요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신청법인 세부현황은 <붙임 1>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신청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으며, 허가 심사위원회는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위원은 총 9명으로 재무 분야 1명, 영업 분야 4명, 기술 분야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위원 명단은 <붙임>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 심사를 하고, 총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득점 시 적격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주)디지파츠, (주)삼미정보시스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주)씨앤피에스, (주)아트엘비에스, (주)웅진플레이도시, (주)프라이머리넷 7개 법인을 적격으로 판단하고 (주)씽크브릿지, (주)아테나, (주)콘텔라 3개 법인에 대해 심사사항별 점수 및 총점 미달로 부적격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 신청법인별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점수 등 심사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판정받은 3개 법인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씽크브릿지는 비콘을 활용한 실시간 전시 및 시설안내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방안의 구체성이 결여하는 등 재무구조가 적정하지 못하다,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주)아테나에 대해서는 GPS 단말기를 이용한 실시간 차량 위치 및 차량상태 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이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자금조달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 투자소요 및 자금조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콘텔라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내 GPS 단말기를 이용한 차량위치 및 원격차량진단 등 차량관제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허가 신청했으며, (주)콘텔라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설비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3가지 항목 전부다 미흡하다고 심사결과를 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조건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웅진플레이도시가 위치정보사업으로 허가 신청한 서비스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워터파크 내에서 위치정보장치(비콘)이 탑재된 락커키를 활용한 일행찾기 등 실내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치

정보 유·노출 등 개인 사생활 침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계획에 충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의 건전성 미흡에도 불구하고 적격으로 총점 73.83점으로 심사위원회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신청 사업 이외의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에는 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추가되는 사업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웅진플레이도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허가조건은 향후 허가 받은 사업 이외의 위치정보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 결과를 각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향후 반기 또는 매년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7개 법인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연간 계획에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 계속 신규로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위치정보사업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현재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진흥원 자료를 살펴보니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조사대상 약 40%가량이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고 초기 자본금이 보통 1억원에서 10억원 미만이 45.6%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1억원 미만이 24.3%이고, 연 매출액 5억원 미만 사업자가 30.2%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의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 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미 허가된 많은 기존 사업자들 가운데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사업에 기여하고 있고 또 기술혁신이나 혹은 일자리 창출에 뭔가 선도를 해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허가조건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은 추가 지원이나 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년 위치정보사업(LBS) 사업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더 점검하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주시지요.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위치정보사업자는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쪽 보니까 지난 3기에서도 위치정보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무상태가 안 좋은 사업자들에 대해서 재원조달계획이 좋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고, 사업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재원조달이야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알아서 잘할 것이고, 사업 아이디어가 좋아서 내준 경우 잘 되는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반기별 매년 제출받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깊이 심층분석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를 해서 우리가 제시한 허가기준에 맞아서 내주는 경우는 잘 운영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허가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우리가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를 내준 사업 자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회수한다거나 이런 사업관리 방안까지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 (2017-23-138)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라>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2016년도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교환율은 1:041로 하며, 2016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붙임 1>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선정한 2016년도 매체교환율과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조사했고, 7월과 11월 '16년도 TV와 신문의 이용행태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 자료를 확인했고, 6월 22일에는 '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에 대해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청점유율 산정방법입니다. 시청점유율은 방송법 제69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52조의3 등에 따라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와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구독률에 환산 시청점유율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반영비율은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100%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에는 소유비율만큼 곱하여 합산합니다. 일간신문이 방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100% 반영하고,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할 경우 소유비율만큼만 곱하여 합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점유율 산정체계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매체교환율입니다. 매체교환율이라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 간 매체 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이용자 조사 및 시장 조사를 통해 2016년도 매출교환율을 측정한 결과, 일간신문의 영향력은 0.41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이용자 조사 0.35 더하기 시장조사 0.46%를 가중평균한 값입니다. 이용자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하여 TV·신문을 통한 시사정보이용률, 이용시간, 매체의존도 등 3가지 측정비율 값을 산술평균하고, 시장조사는 텔레비전 방송매출과 일간신문의 광고매출 자료를 상대 비교해 산정하며 시장에서의 TV와 신문의 영향력 차이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년도 TV·신문이용행태 조사 결과와 '16년도 광고매출 조사 결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간신문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입니다. 환산대상은 방송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3개 일간신문이 되겠습니다. 환산방법은 일간신문의 구독률에 매체교환율 0.41을 곱하여 환산된 시청률을 구한 후 이를 2016년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청률의 합인 28.091로 나누어 일간신문구독률의 환산 시청점유율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일간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결과는 조선일보 계열 6.807%, 중앙일보 계열 3.492%, 동아일보 계열 3.410%, 매일경제 계열 1.23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의 산정 결과

입니다. 산정대상은 텔레비전 방송 채널 388개를 운영하고 있는 266개 방송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요 지상파방송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27.583%, (주)문화방송 14.982%, (주)에스비에스 8.669%, 한국교육방송공사 2.000%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SO계열PP와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씨제이이엔엠(주) 10.982%, 티캐스트 2.656%, (주)아이에이치큐 1.722%, (주)현대미디어 0.709%, (주)씨엠비홀딩스 0.045%, (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1.162%로 나타났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편성·보도PP의 시청점유율은 (주)조선방송 9.829%, (주)제이티비씨 7.727%, (주)채널에이 6.624%, (주)매일방송 5.477%, (주)와이티엔 2.160%, (주)연합뉴스티브이 1.824%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2016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한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2016년도 매체교환율 및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는 대외에 발표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시청점유율 제도가 왜 생겼고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은 원래 종편PP가 등장하면서 신문이 방송사업에 진출할 경우 신문의 영향력도 같이 합산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합산한 영향력이 30%를 넘으면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이 30%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모든 방송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매년 점유율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30%를 넘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각 방송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일반 국민, 학계, 정치권 등에서도 다양하게 참고하고 있고, 특히 광고주들은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이 자료를 보면 조사하는 배경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인식됩니다. 그런데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또 조사대상 가구가 고정형TV 일반시청자 4,000가구를 어느 특정 1개 시청률 조사기관이 내놓는 수치인데 1:1.41 방송과 신문의 영향력지수를 그렇게 산정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나온 수치이겠지만 그것도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 되겠는가 하는 문뜩 그런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치가 정말 공정하게 현실을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의 제기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 조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지금 예산이 연간 12억 7,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매년 어느 시청률 조사기관에서 독점하고 있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지금 국내 시청점유율 조사하는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닐슨과 TNMS 두 군데인데 닐슨은 대기업 계열에 해당되어서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TNMS 한 군데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고정형 TV뿐만 아니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시청점유율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제한이 없어서 닐슨에서 올해 사업을 맡아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청행태가 갈수록 바뀝니다. 그래서 꼭 고정형TV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을 통해서 보는 또는 VOD를 통해서 보는 이런 시청행태가 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특히 신문을 가지고 있는 방송매체가 신문과 같이 합산을 하기 때문에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시청점유율이 높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신문을 갖지 않는 매체력은 그만큼 시청점유율이 떨어지느냐? 수치로 보면 보도채널 같은 경우 많이 떨어집니다. 2%입니다. 종편 같은 경우는 8, 9%니까 지상파와 맞먹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겠고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보이지만, 그래서 이런 회의가 들기 때문에, 모든 조사대상 채널이 500개 되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500여개 채널을 1등부터 500등 꼴찌까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0.00 몇 퍼센트 차이로 순위가 바뀌는 것을 굳이 순위를 매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물론 광고주나 학자들이나 연구종사자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자료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지만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것은 거의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과물을 우리가 내놓을 때 이것이 보도가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등부터 500등까지 순위를 매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의 합당성 여부

를 떠나서 결과물로 놓고 볼 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좀 더 다른 방식이 없는가 하는 부분들을 연구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무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시청행태 변화를 반영해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 산정작업을 작년과 올해 계속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인식률이 떨어져서 보완작업을 해서 올해는 스마트를 통해서 방송을 볼 경우에도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고정형과 VOD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폰 이것을 다 합산한 통합시청점유율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산정해 보고 이것이 저희가 자신이 생기면 아예 법을 바꿔서 저희가 고정형TV 위주가 아니고 통합시청점유율을 기반으로 시청점유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재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허 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앞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시다만 신문의 방송 진출에 따른 여론의 독과점, 독과점 표현이 애매모호 합니다만 여론 형성에 미치는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책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수차례 드러난 것처럼 30%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의 결과치가 나오는 것은 지금 정책목표를 과연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기한 어떤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4기 방통위의 출범과 함께 이 문제에 관련된 개선안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통합시청점유율로 전환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TV방송과 일간신문에 한정된 조사라는 것은 여전히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N스크린 기반이 된다 하더라도 시사 주간지라든지 월간지라든가 라디오 이런 쪽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여론 형성에 어떠한 미디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보조적인 자료 혹은 참고자료가 있어야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확보해 내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예산을 투입해서 여론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일부 종편이라든가 몇몇 회사들에 있어서는 이것이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운데 우리가 1등이다, 아니면 범주를 제한해서 보도채널 가운데 우리가 1등이라든가 이런 식의 여론의 독과점 형성을 보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마케팅 수단으로 전환된다면 이것은 당초 목적을 다르게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보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과연 국민이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여론형성이 예를 들면 1%, 시청점유율이 3% 미만이라고 한다면 더 필요하고 필수적인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정 정도 30%를 넘어가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규제되어야 하고, 그런 정책목표 달성보다는 다소의 부작용 나온 것에 관해서 4기 방통위에서 무엇인가 종합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30%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느냐, 아니면 그것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구간을 설정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같은 사례를 보면 구간을 10%, 20%, 25%, 30% 이렇게 여러 구간을 30% 이내에서도 나누어서 차원을 달리 해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어떨지, 지금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예를 들면 아주 낮은 쪽 파트는 매년 하는 것보다 기간을 3년 단위로 나누어서 하더라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특별히 점유율이 변화될만한 변동요소가 안 생기면 구간이 아주 낮은 사업자들은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성욱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연구를 통해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까지 염두에 두고 시청점유율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구간을 통해 본인의 시청점유율에 따른 규제도 하고 진흥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청점유율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미디어다양성위원회와 각 연구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리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를 올려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위원님의 지적을 잘 명심하시고 이것이 보다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회를 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 (2017-23-139)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마>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공의무 미달성 방송사업자인 원주MBC, MBC강원영동, 춘천MBC, 채널A, 연합뉴스TV, CJ E&M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18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시 정부 제작지원금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편성 실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사업자 중에서 이행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2016년도 실적 공표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2월부터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을 제출받아서 산정 평가를 하였고, 7월 5일에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실적 평가 내용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의 주요내용은 방송사업자는 시·청각장애인의 TV시청을 돕기 위한 장애인방송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은 '12년 7월부터, 유료방송은 '13년 1월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는 자막·화면해설·수어 유형별로 중앙지상파는 2013년, 지역지상파는 2015년, 유료방송은 2016년도까지 달성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의무를 부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중앙지상파는 자막은 100%, 화면해설은 10%, 수어통역은 5%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지상파도 마찬가지로 보도·종합PP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SO와 위성방송은 자막은 70%, 화면해설은 7%, 수어통역은 4% 그렇게 의무가 부과되고, 일반PP들은 자막은 70%, 화면해설은 5%, 수어통역은 3%까지 목표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행의무 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전체 139개사 중에서 133개사가 달성해서 95.7%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필수지정사업자 56개사 중에서 51개사가 달성하였고, 고시의무사업자는 83개사 중 82개사가 편성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는 6개사로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주MBC는 폐쇄자막과 수어통역은 목표를 달성했는데 화면해설이 목표 10%에 비해서 실적은 9%로 미달했고, MBC강원영동도 마찬가지로 화면해설에 한해서 목표인 10.0%에 조금 못 미치는 9.1%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춘천MBC도 화면해설에 관해서 8.8%로 다소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연합뉴스TV와 채널A, CJ E&M은 화면해설과 수어통역은 달성했는데 폐쇄자막에 한해서 연합뉴스TV는 목표인 100%에 못 미치게 79.9%, 채널A는 99.9%, CJ E&M은 68.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가 건의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의내용을 보고드리기 전에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박스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MBC와 MBC강원영동, 춘천MBC는 수어통역은 초과달성했는데 화면해설이 포함된 MBC본사의 수중계 프로그램 중 일부를 자체편성으로 변경함에 따라 목표를 약 86시간 달성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TV는 자막 편성비율이 75%에서 100%로 증가했는데 미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차질이 발생했는데 1일 5시간 분량 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주시청 시간대에는 주어진 자원 하에서 가급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주시청시간대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는 자막방송 제작업체의 시스템 오류로 일부 누락 시간 차질이 8시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총 대상시간에 비하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미달성 사업자 6개사를 출석시켜 미달성 사유를 청취하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정상 이행 중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99조에 따라 시정 명령도 가능하지만 미달성 사유가 고의가 아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줄 것과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18년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 정부 제작지원금을 축소하고 편성 실적을 보도자료 배포, 방통위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공표해 달라고 건의를 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8월 10일 평가결과를 공표하고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지급하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금을 축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2016년도 장애인 방송 편성의무 평가 결과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간단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TV를 그래도 시청할 수 있게끔 보도수단으로 자막도 장애인만 볼 수 있는 폐쇄자막이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만 보는 자막에 한해서 목표가 부과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다른 것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10%, 5% 정도니까 그것을 어기면 그것은 정말 성의가 없는 것이지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CJ E&M 같은 경우에 자막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목표가 100%가 아니라 70%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아시다시피 CJ E&M이 아주 큰 채널입니다. 시청률도 높고 어느 지상파보다는 연간 매출액이 더 높을 정도로 급성장한 채널이고 또 많은 드라마, 예능이 강세를 보이는데 장애인들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100% 자막을 넣지 않아도 되는 70%만 넣어도 되는데 이것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또 80시간이나 어겼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게을리하거나 장애인 배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사무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정승원 시청자지원팀장

-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PP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말씀드린 대로 완성 시점이 실질적으로 작년 '16년도까지 목표를 채우는 것으로 계속 변화되어 오는 과정이었다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작 현상을 보면 CJ E&M 같은 경우는 사전제작을 해서 자막을 입혀 놓고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누락들이 발생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70%이기 때문에 중간에 체크를 해서 더 열심히 했으면 이 목표는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도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특히 CJ E&M 같은 경우는 다른 지상파나 종편과 달리 편성에 아무 제약이 없고 몇 번이나 재탕, 삼탕 재방송을 계속 해 나갑니다. 그래서 광고도 계속 붙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매출액도 SBS보다 연간 매출액이 높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채널이기 때문에 70%로 PP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도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른 PP와 형평성 때문에 분류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우리가 경고를 줘서 다시는 이런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위원님 지적대로 CJ E&M에 대해서는 추후 엄정히 경고 조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서 매체력이 늘어나고 또 사세가 확장되고 시청률이 높아지고 광고매출이 그만큼 높아지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행해야만 사회적 공기로써 방송사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들을 엄중하게 경고해 주기 바랍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장애인들의 시청권은 더 많이 신장시켜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장애인 시청권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 정승원 시청자지원팀장

- 장애인방송 제작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42억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 수신기 보급에 28억원, 그 다음에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스마트 수어방송 등 '16년도에 약 100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부분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상파방송 두 곳의 내부에 여러 가지 비상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MBC 같은 경우 기자, PD들이 제작거부 움직임이 있고, KBS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아주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북한군이 팜 주변 해역에 대해서 미사일 4발을 발사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고도, 거리 이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정부가 안보 관계 부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유사시 긴급 대응 태세, 이것은 당연히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매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는 자세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 위원회로서는 방송사와의 연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위급사항을 충분히 잘 알리고 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대해서 성실하게 정말 실전에 가까운 정도로 연습 준비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을지연습 훈련 등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위원회 차기 회의는 8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00분 폐회 】